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다315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나64315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다315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나4430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가합3217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3.28.선고 2012나44305 판결

판결선고 2019.10.3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社人)]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9.1.24.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2.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원고는 1957.3.2.과 같은 해 3.20. 이 사건 토지들 중 합계 34필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1957.3.20.과 1965.2.9. 이 사건 토지들 중 합계 4필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거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r주식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이 사건 토지들은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 작은 사다리를 모양, 얇고 긴 바늘모양 얇은 직사각형 모양, 얇고 긴 띠 모양, 길쭉한 심각형 모양 등의 형상을 띠고 이 사건 토지들 중에는 폭이 넓은 토지가 없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들과 인접한 다른 토지들이 모두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폭도 넓은 것과 대조를 이룬다.

다.이 사건 토지들 중에는 3㎡, 7㎡, 16㎡, 19㎡, 20㎡, 24㎡, 25㎡, 30㎡, 33㎡등 그 면적이 눈에

띄게 작은 필지가 존재하고, 이 사건 토지들 중 총 5필지는 현재 지목 자체가 '도로'로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들은 현재 도로, 주택가 골목길, 빌라 앞마당, 인도(건물과 차도 사이의 보도블록)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 필지에 관하여 제출한 폐쇄지적도에 나타난 과거 형상은 현재의 형상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인근토지들의 지목은 '전(田)'또는 '답(畓)'으로 표시되어 있다.

라.이 사건 토지들은 현재 도로 주택가 골목길, 빌라 앞마당, 인도(건물과 차도 사이의 보도블록)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 필지에 관하여 제출된 폐쇄지적도에 나타난 과거 형상은 현재의 형상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인근토지들의 지목은 '전(田)'또는 '답(畓)'으로 표시되어 있다.

바.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 위에 도로 및 인도를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기 시작한 불상의 시점 이후에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원고가 그에 대하여 문제삼거나 사용료를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3.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법인인 원고는 토지의 농업상의 이용을 증진할 목적으로 토지개량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수용.매수한 후 당시 농지이던 인접토지의 농민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무상으로 농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 농지들이 건물(빌라, 상가)의 대지로 전환된 후에는 건물 거주자를 비롯한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소유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 이 사건 토지들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 위에 도로, 인도를 설치한 시점 및 그

이후 원고의 보유기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또는 그와 최대한 근접한 시점의 이 사건 토지들 및 인저토지들의 형상과 사용현황, 이 사건 토지들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피고가 이 사건토지들위에 도로, 인도를 설치한 이후의 원고의 형태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4.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보지 아니한채 이에 어긋나는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 또는 통행로의 무상 제공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안 판 사 박 판 사 노 주 심 판 사 김